

2024년 제6차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근로재(조리원) 채용 공고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6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공무직 (조리원)	1명	채용일(24.7.1. 예정) ~ 정년 도래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식당 주방업무(조리) ○ * 최대 150명분 ○ 직원식당 관리(청소 등) ○ 그 밖에 직원식당 운영 관련 사항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서울시 종로구)

※ 채용 일정에 따라 최초 근무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파견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 직종별 응시 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조리원)	(응시요건) '공통 자격' 외에 별도 응시 요건 없음 (우대사항) ○ 관련 분야(조리) 자격증 소지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한식·중식·일식·양식 기능사 이상</td> <td style="width: 50%;">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자격증</td> </tr> </table> <p>* 자격증은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종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함.</p> <p>○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경력별 차등 우대) - 업무 관련 경력자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단체급식(조리)' 명시되어야 인정) · 근무경력은 사업장별 6개월 이상부터 인정(6개월 미만 불인정)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p>	한식·중식·일식·양식 기능사 이상
한식·중식·일식·양식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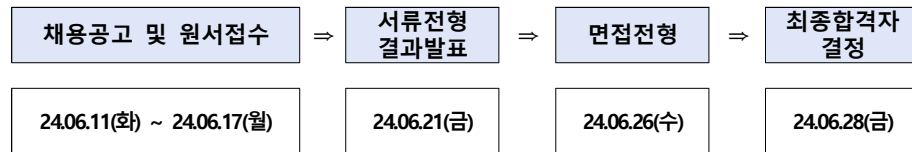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06.26.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기계/전기/건축 관리) 등), 주당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향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의 관인', '담당자 설명', '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정량·정성평가) 시 시험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구분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 형평)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관련분야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조리원	100점+가점	60	20	20	3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4.06.21.(금) 누리집 공고

□ 2차: 면접전형

-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계량화하여 평가

- | | |
|--------------------|-----------------------|
|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② 당해 업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공무직 (조리원)	1명	예비순위에 따라 1명 이상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예정)	내용
채용 공고	'24.6.11.(화) ~ 6.17.(월)	· 국가유산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나라일터 게재
응시원서 접수	'24.6.11.(화) ~ 6.17.(월)	· 전자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함)
서류합격자 발표	'24.6.21.(금)	· 국가유산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나라일터 게재
면접시험 예정일	'24.6.26.(수)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4.6.28.(금)	· 국가유산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나라일터 게재
채용예정일	'24.7.1.(월) 예정	· 변동 가능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만 접수 *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전자우편 접수: shchung1994@korea.kr
- 메일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응시원서 접수
○○○(응시자 성명)”
- ※ 전자우편접수 시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일괄 제출하며,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응시자 제출서류(각 1부)

목 록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붙임
2. 응시원서 1부(필수) * (서식1)
3. 입사지원서 1부(필수) * (서식2)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서식3)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필수) * (서식4)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필수) * (서식5)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필수) * (서식6)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서식7)
9.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 등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서식8)
1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으로 제출하되, 재직기간 / 직위 또는 직급 / 담당업무 상근여부 / 주당근무시간 / 발급자 /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11.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3)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4)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1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시) * (서식7)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시험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

7.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2024. 07. 01.(월) ~ 정년(60세) 도래시까지

*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실무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 만료 시기에 직무수행 적성성평가를 거쳐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업무능력 부족, 직무 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채용분야	근무시간	근무형태	비고
공무직 (조리원)	07:00 ~ 16:00 (휴게시간 포함)	주5일(40시간)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주말 및 휴일근무 포함 / 기관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다. 보수: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채정기준'에 의거

○ 기본급(1호봉 기준, 4대 보험 등 공제 전)

(단위: 원)

월 급여	직종	기본급	식대	합계
	조리원	1,955,840	140,000	2,095,840

○ 기타 급여

- 명절휴가비(연 2회, 설·추석 각 550,000원 지급) * 명절 당일 재직 기준 지급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 기본급 및 기타급여 등 보수의 경우 예산 및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 책정기준, 경력에 따라 호봉 조정으로 인한 변동 가능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8. 유의사항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24.8.31.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06.17.(월) 18시)까지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채용 관련: 기획운영과 서무계 ☎ 02)3701-7613
 - 직무 관련: 기획운영과 관리계 ☎ 02)3701-7623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분야
	공무직(조리원)

■ 작성목록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계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2. 응시원서(필수) * (서식1)	
3. 입사지원서(필수) * (서식2)	
4. 자기소개서(필수) * (서식3)	
5.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또는 경력증명서) (필수) * 사본 제출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필수) * (서식4)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필수) * (서식5)	
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필수) * (서식6)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필수) * (서식7)	
10.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 등 체크리스트(필수) * (서식8)	
11.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또는 경력증명서)	
12.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목록 서류 중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칸에 “○” 표시

(서식1)

응시원서

본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6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 접수 번호			응시분야	조리원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 시 표					사진부착 불요함
< 공무원 근로자 채용시험 >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 응 시 번호			응시분야	조리원	
2024년 6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정
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
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분야 :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성 명 :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3.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4.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5.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식2)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지원분야	조리원	성명	(한글)
연락처			전자우편		
생년월일					
주소					
응시자격 충족 여부	<input type="checkbox"/>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 필 또는 면제(남성만)				
우대 사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한식·중식·일식·양식'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동종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인정 <input type="checkbox"/> '단체급식(조리)'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1개 사업장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				
가점 사항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2. 우대사항					
관련 분야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 기능사	0000년 00월 00일			
관련 분야 근무경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주당근무시간
	00기관(00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담당업무 기재 (~기계 관리 등)	작성자 기재	주당 근무시간 기재(40시간 등)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6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 또는 이력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우대사항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 경력란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며,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학위, 경력사항만 기재

(서식3)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지원직종 직무기술·직무능력 포함 작성)
<p>(유의사항)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p>

○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 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증명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서식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종로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7)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4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원자 (서명)
년 월 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 서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만 작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